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0가단1146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현, 류홍수

피고1. 의료법인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재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중현

변론 종결2021. 12. 7.

판결 선고2022. 1. 11.

주 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의료법인 B과 E 사이에 2017. 4.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의료법인 B은 E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4. 18. 접수 제20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E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E에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7. 접수 제74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E 사이에 2019.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의료법인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의료법인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E 사이에 2019. 2.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 E에게, 피고 C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2. 접수 제85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D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9. 접수 제547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추심금 채권

(1) 건축재료 도소매업, 타일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72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9. "F은 원고에게 217,624,39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3813호로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F이 E에 대하여 갖고 있는 '부산 사상구 G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 중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9640호로 가압류되어 있는 217,624,391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위 판결에 따른 2017. 4. 12.부터 2017. 9. 21.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합하여 14,945,153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0. 11. 위 신청 내용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10. 16. E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860호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7. 22.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13. 확정되었다.

나. 사해행위

(1) E는 2017. 4. 5.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의료법인 명의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4. 18. 접수 제20560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2) E는 2019. 2. 26.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7. 접수 제7457호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3) E는 2019. 2. 18.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1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2. 22. 접수 제8522호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이후 피고 C는 2019. 10. 7.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9. 접수 제54704호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E의 채무초과 상태

(1) 한편, E는 2016. 12. 27. F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2145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E의 채권자들이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에 보조참가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2. E의 F에 대한 2015. 6. 11.자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가 860,785,645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E의 채권자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나5017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4. E의 F에 대한 2015. 6. 11.자 및 2015. 8. 6.자 공사도급(변경)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무는 587,980,504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E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1.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9다271067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4.경 당시 E는 소극재산으로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87,980,504원, H은행에 대한 20억 원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채무, I단체에 대한 80,000,000원의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이외에 예금채권 약 186,600,000원(J은행 47,778,187원, K은행 100,001,772원, 22,749,639원, 16,116,754원),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시가 2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인 2019. 2.경 당시 E는 소극재산으로 F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587,980,504원, L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37,921,000원, M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109,352,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시가 2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3부동산 이외에 예금채권(2019. 2. 18. 기준 J은행 163,000,000원과 3,750,000원, 2019. 2. 26. 기준 J은행 54,000,000원과 4,350,000원)만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4)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6.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I단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22. 2019. 2. 18.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80,000,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 을가 5호증 내지 7호증, 을가 10, 11호증의 1, 을나 1,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기관, 주식회사 O, K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E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F의 E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받은 것인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1523 판결 등 참조), 피압류채권인 F의 E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7. 4. 5.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의 추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E의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의 각 가액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써 E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그 부족이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의료법인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의료법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어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증여한 행위 자체가 재산상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증여계약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의료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E와 수익자인 피고 의료법인 사이의 '재산상'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결과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처분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의료법 제48조 제3항 소정의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의료법인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E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원상회복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즉 원물반환을 구하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 D가 악의임을 전제로 피고 C, D에게 원물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피고 D가 선의임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하여 가액배상으로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E가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각각 주요하거나(이 사건 제1매매계약)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 사건 제2매매계약)인 이 사건 제2, 3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과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E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병원신축과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비용, 다른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고,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므로, E의 총재산의 가액에 변함이 없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E가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C,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 D는 이 사건 제1, 2, 3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E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먼저 피고 C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은 피고 C이 준비서면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이 E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E가 병원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악의라는 추정을 반복하고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D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1호층 내지 을나 3호층, 을나 5호층의 1 내지 을나 21호층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의 부친인 Q은 2018.경부터 공인중개사인 P에게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알아봐 달라고 상가매수를 의뢰한 점, ② 이에 P은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매물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9. 9. 초경 R 공인중개사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도의뢰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점, ③ 매도인인 피고 C과 매도인측 중개인인 R, 매수인측인 피고 D의 부친 Q, 매수인측 중개인인 P이 2019. 10. 7. 만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④ 피고 D와 Q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한 것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피고 C을 알게 되었을 뿐이며, 이들 사이에 친인척 등의 인적 관계나 다른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점, ⑤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55,000,000원은 적정한 시가에 상당한 것이고, 피고 D는 피고 C에게 매매대금 25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자금출처를 특히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⑥ 피고 D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하여 임대수입을 얻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E를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 C과 E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⑦ 피고 D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임차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 차임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등을 납부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제3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전득자인 피고 D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마.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득자인 피고 D가 선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득자인 피고 D가 선의인 이상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C 사이에서만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인 피고 C이 사해행위 목적물을 선의의 전득자인 피고 D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피고 C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게 되어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6,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I단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사실,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80,000,000원이었던 사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2. 2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그 목적물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1)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0860 추심금소송에서 "E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13,056,985\text{원} \{=140,000,000\text{원} + 30,665,753\text{원} (=140,000,000\text{원} \times 0.15 \times 533\text{일}1) / 365\text{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2,391,232\text{원} (=140,000,000\text{원} \times 0.12 \times 921\text{일}2) / 365\text{일}\}$ 이다.

2) 사해행위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을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10. 7.경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25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실제

피보전채권액이 8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 255,000,000원에서 말소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8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175,000,000원(=255,000,000원-80,0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13,056,985원과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175,000,000원, 수익자인 피고 C이 취득한 이익 210,000,000원 중 가장 적은 금액인 위 공동담보가액 1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영범

별지

- 1) 2017. 12. 15.부터 2019. 5. 31.까지
- 2) 2019. 6. 1.부터 2021. 12. 7.까지